

의안번호	제2825호
의 결	. . .
연 월 일	(제 회)

의결사항	
------	--

고성군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

발 의 자	우정욱 의원 등 6인
발의연월일	2024. 8. 23.

고성군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 (우정욱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825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4. 8. 23.

발 의 자 : 우정욱, 최두임, 김석한,
김향숙, 정영환, 김원순 의원
(6인)

1. 제안이유

이 조례는 고성군이 추진한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후관리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“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” 등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(안 제2조)
- 나.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
- 다. 사후관리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(안 제5조 및 제6조)
- 라. 사후관리 모니터링 평가, 구성, 기능에 관한 사항(안 제7조 ~ 제9조)
- 마. 평가단 활동 관리에 관한 사항(안 제10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, 「고성군 도시
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등

나. 입법예고: 고성군의회 공고 제2024-42호

- 예고기간: 2024. 8. 23.(금) ~ 2024. 8. 28.(수)[5일간]
- 의견반영 등 조치 내용: 의견 없음

4. 본문: 붙임과 같음

고성군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고성군이 추진한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후 관리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”이란 고성군이 지역발전 및 도시재생을 위하여 추진하는 「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된 지역을 말한다.
2. “사후관리계획”이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업효과를 지속하기 위한 계획을 말한다.
3. “공동이용시설”이란 「고성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.

제3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4조(군수의 책무) 고성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는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업효과를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

고, 필요한 재원의 확보와 운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.

제5조(사후관리계획 수립) ① 군수는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이 다시 쇠퇴되지 않도록 사업 완료 6개월 전까지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도시재생사업 완료 이후 중장기 주요 목표 및 성과
2.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·정비·운영에 관한 현황분석 및 계획
3. 민간참여 확대 방안 및 도시쇠퇴 방지 대책
4. 모니터링 방식 및 평가체계 구축(평가단 활동 등)
5. 지역공동체 활성화 운영 계획
6.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③ 군수는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「고성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3조에 따른 고성군 도시재생위원회에 사전 자문을 받아야 한다.

제6조(사후관리 지원) 군수는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, 기관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1. 지역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 사업
2. 지역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사업
3. 공동이용시설의 조성 및 정비·운영 관리

4. 사후관리를 위한 컨설팅 지원사업
5. 민간 참여 확대를 위한 지원사업
6. 지역공동체 역량강화를 위한 주민 교육사업
7. 그 밖에 군수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7조(사후관리 모니터링 평가)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후관리를 지원할 경우에는 매년 1회 이상 사후관리 모니터링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.

② 군수는 모니터링 평가 결과를 제5조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계획에 반영해야 하며, 예산 범위 내에서 해당 지역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최대 3년간 지원할 수 있다.

제8조(모니터링 평가단의 구성·운영 등) ① 군수는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후관리 지원을 위하여 모니터링 평가단(이하 “평가단”이라 한다)을 구성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평가단을 구성할 경우,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.

제9조(평가단의 기능) 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기능을 수행한다.

1. 도시재생사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평가
2. 사후관리계획에 따른 모니터링 및 평가
3. 공동이용시설의 운영·유지에 관한 사항

4. 주민협의체 등 지역공동체 활동 사항
5. 지역경제활성화 및 주민역량강화에 관한 사항
6.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10조(평가단 활동 관리) 군수는 평가단을 두는 경우 반기마다 평가단의 활동 보고를 받고, 지역별로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 계 법 령(발췌)

□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

제2조(정의)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<개정 2017. 12. 26., 2018. 4. 17., 2019. 8. 27., 2020. 1. 29., 2021. 7. 20.>

7. “도시재생사업”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.

가.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다음 어느 하나의 사업

- 1) 국가 차원에서 지역발전 및 도시재생을 위하여 추진하는 일련의 사업
- 2)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발전 및 도시재생을 위하여 추진하는 일련의 사업
- 3) 주민 제안에 따라 해당 지역의 물리적·사회적·인적 자원을 활용함으로써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사업
- 4)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에 따른 정비사업 및 「도시재정비 촉진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
- 5) 「도시개발법」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및 「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
- 6)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및 산업단지 재생사업
- 7) 「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

- 8)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에 따른 상권활성화사업 및 시장정비사업
 - 9)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도시·군계획시설사업 및 시범도시(시범지구 및 시범단지를 포함한다) 지정에 따른 사업
 - 10) 「경관법」에 따른 경관사업
 - 11)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에 따른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
 - 12) 「공공주택 특별법」에 따른 공공주택사업
 - 13)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에 관한 사업
 - 14) 그 밖에 도시재생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
- 나. 혁신지구에서 혁신지구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(이하 “혁신지구재생사업”이라 한다)
- 다. 도시재생전략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제26조의2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과 연계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(이하 “도시재생 인정사업”이라 한다)

□ 고성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제3조(도시재생위원회) ① 「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고성군 도시재생위원회를 둔다.

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「고성군 계획 조례」에 따른 고성군 계

획 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한다.

제5조(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) ① 법 제1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설치하는 고성군 도시재생지원센터(이하 “도시재생지원센터”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
2. 영 제15조제1호의 주민참여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
3.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 제안의 사전검토
4. 주민협의체에 대한 지원 및 협력사업
5. 도시재생 관련 교육 및 역량 강화 사업
6. 도시재생과 관련한 홍보
7. 도시재생사업의 모니터링, 분석, 평가 및 보고
8. 도시재생 관련 조사·연구, 모델 개발, 정책 제안 등
9.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정하는 업무

②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,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.

③ 군수는 도시재생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.

④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제3항에 따른 공무원과 전담직원 1명 이상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을 둘 수 있다.

⑤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고성군(이하 “군”라 한다) 및 군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⑥ 군수는 도시재생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 등 군수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.